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교육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3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된 이후에도 지방 단위 보육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인가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에게 일괄 위임되어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을 설립하려는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비영리 법인 설립은 교육감에게, 어린이집 설립은 지자체장에게 신청해야 하는 등 현장의 혼란이 발생하여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에 관한 사항도 보육 업무를 담당하는 시·도지사가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보육 관련 비영리 법인 설립 인가 및 정관 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대통령령 제 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교육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 중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 변경 허가 등에 관한 권한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권한의 위임)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 3. (생략) <u><신 설></u>	제26조(권한의 위임)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 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교육부장 관 소관의 비영리법인 중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 변경 허가 등에 관한 권한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	
연 락 처	(044) 203 - 7203